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736
----------	------

2025년 6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5월 26일, 임만균 의원 외 22명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33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6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임만균 의원]

가. 제안이유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보유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농업·임업피해, 재산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의3 신설)
-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보유 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전시 행위를 금지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지난 2022년 법 제8조의3 개정(신설)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 금지가 규정되었고, 위반 시 법 제69조(벌칙) 제1항제1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부칙을 통해 개정 조항은 1년 경과 후 시행하고, 시행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는 4년 동안 전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¹⁾를 둔 바 있음.

- 또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기존 ‘등록제’에서 보유동물 서식환경 기준과 전문인력 기준 등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제’로 전환되었음.

1) 부칙 <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3, 제8조의4, 제11조, 제13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호다목·라목, 제69조제1항제17호 및 제7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3 및 제69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의 공포 당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4년 동안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 제9조의3은 앞서 제시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야생동물 전시 행위 허가 및 금지,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 안 제9조의4는 법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정원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안 제13조제3항제1호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²⁾하여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이견 없음.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4. 2. 6.] [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1. (생 략)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 13. (생 략)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제2호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로 정하는 종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2. 학술 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시행규칙 제7조의5로 정하는 경우

제9조의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또는 파손에 의한 피해

제13조제3항제1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를 “시행규칙 제7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2023년 12월 13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한 보유동물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u> <u>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u> <u>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u> <u>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u> <u>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u> <u>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u> <u>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u> <u>아니하다.</u> <u>1.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u> <u>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경우</u> <u>가.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u> <u>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u> <u>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u> <u>낮은 야생동물로서 「야생생</u> <u>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u>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u> <u>이라 한다) 제7조의4로 정하</u> <u>는 중</u> <u>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u> <u>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u> <u>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u> <u>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u> <u>호에 따른 해양생물</u>

〈신 설〉

제1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② (생 략)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2. 학술 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
적으로서 시행규칙 제7조의5로
정하는 경우

제9조의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
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
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
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건물·시설 등의 부식 또는 파
손에 의한 피해

제1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
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
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
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
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 4. (생 략)

제20조(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
물의 피해방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7조의2를 따른다.

-----.

1.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
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2.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
물의 피해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행규칙 제7조의2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의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5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9조의4	야생동물 피해예방	200,000

※자료: 2025 서울시 예산서

※사업내용

- 위치 : 멧돼지 출현 가능성이 있는 산림 인접 자치구 등
- 규모 : 차단울타리 설치 및 보수, 포획틀 설치
- 사업기간 : 2025.1. ~ 12.
- 사업비 : 200,000천원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